



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

개인이 고향(무주군)에 기부하면
무주군은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
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

고향사랑기부제 시행 (2023년 1월 1일부터)

01.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

-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(법인은 기부 불가)

02.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

- 고향에서 준비한 답례품 제공

- 10만원까지 소득세액 전액 공제(초과시 16.5%)

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

01. 기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

- 복지, 문화예술, 지역활성화 사업 등 추진

02. 지역 내 생산 답례품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

-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

- 문화, 예술, 관광 상품을 제공하여 방문객 증가

